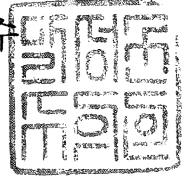


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

의 안	
변 호	2092

제출일자 : 2022. 3. 1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보고이유

-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,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함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- 가.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
- 나.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, 제4조, 제9조

3. 운영현황

- 가. 위 치 :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400(하빈PMZ평화예술센터)
- 나. 운영예산 : 235백만 원
- 다. 운영방식 : 민간위탁
- 라. 수탁기관 : 마을문화센터 숨씨협동조합
- 마. 인 원 : 3명(센터장 1, 직원 2)
- 라. 주요업무
 - (1)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
 - (2) 지역특산품 및 지역 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
 - (3) 평화예술촌(낙동마을) 사회적경제조직 지원

4. 재계약 경위 및 향후일정

- 가. 2022. 2. : 재계약 서류 접수
- 나. 2022. 2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(재계약 적정 판단)
 - 심사결과 : 82.5점으로 재계약 의결(70점 이상시 적격)
- 다. 2022. 4. : 협약 체결 및 공보 게재
- 라. 2022. 6. : 위·수탁 개시
 - 위탁기간 : 2022. 6. 1. ~ 2024. 5. 31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(위탁운영)**

-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 관리·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1.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·출연한 법인
 2.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,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.
-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협약으로 정한다.
- ⑤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⑥ 센터의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[정의]**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[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]**

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[재계약]**

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